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68,880,089	104,066,403
일반회계	3,016,554,748	90,496,642
특별회계	452,325,341	13,569,760
공기업특별회계	356,657,126	10,699,71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6,744,053	5,002,3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9,913,073	5,697,392
기타특별회계	95,668,215	2,870,046
교통사업 특별회계	34,159,157	1,024,77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92,123	71,76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355,964	100,679
대지보상 특별회계	1,298,503	38,955
기반시설 특별회계	105	3
수질개선 특별회계	20,394,596	611,838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1,910,833	357,325
균형발전특별회계	21,869,934	656,09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87,000	8,61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177,31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1,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